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2. 17 선고 2020가합111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필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호, 한필운, 장창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우성훈

변 론 종 결 2022. 1. 20.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32,211,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84,201,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 30, 32, 34,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라오스에서 숯가마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사업자금의 조달 등 자금관리를 맡고, 숯 유통업 경험이 있는 피고는 숯의 생산이나 유통 등 영업전반을 담당하되, 수익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하고, 위 숯가마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0. 9.경부터 2011. 9.경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사업자금을 송금하고, 2011. 3. 25. 라오스로 출국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등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2011. 12. 말경 피고가 한국으로 귀국한 사이에 원고가 독단적으로 숯을 판매하려고 하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제3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등의 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이에 원고는 2011. 12. 31.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라오스로 출국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사업자금으로 투입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1. 8.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피고의 요청으로 그중 2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고,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인 2012. 2.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동업과 관련하여 2,324,057원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도 라오스에서 숯가마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2.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동업약정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피고는 그간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독식하였으므로, 피고는 2011. 3.경부터 2020. 6. 30.까지 얻은 수익금 2,671,063,439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335,531,719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수익금 약 332만 원(≒ 300만 원 - 200만 원 + 2,324,057원)을 공제한 나머지 1,332,211,7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동업이 종료되었다고 할 경우 피고는 동업종료에 따른 정산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입한 돈 1억 5,199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형성한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2011. 3.경부터 2020. 6. 30.까지 수익을 얻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돈(주위적 청구금액과 같다)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동업은 원고의 탈퇴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이미 종료되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1, 제34, 35, 36호증,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한국으로 귀국한 직후 피고를 만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입한 돈이 1억 4~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반환해 줄 의사가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었던 사실, 이후 원고는 라오스로 출국하지 않은 채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는 혼자서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한 사실, 피고는 2012. 2. 16. 원고에게 2,324,057원을 지급하면서 더 이상은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가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피고에게 동업정산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동업에서 임의탈퇴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동업이 계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하는데,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동업종료에 따른 정산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1억 5,199만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그 전액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뿐 동업종료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조합재산의 상태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그리고 갑 제1호증의1, 제3 내지 6, 9, 34, 35,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돈이 1억 5,199만 원이라거나(원고가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한화가 89,841,600원가량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달러화나 라오스 현지에서 사업비로 직접 지출한 금액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의 투자금 액수나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정산금 또는 투자금 반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동업 당시 형성한 물적 재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사용수익 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인 조합으로 운영되던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분을 금전으로 계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남은 재산은 피고의 단독소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사경화, 판사 나소라, 판사 조재혁